

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5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이병도, 김 경, 김성준,
남창진, 도문열, 유정인,
이영실, 이원형, 임규호,
임종국, 정준호, 한 신,
허 훈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장실습 산업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환경과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실습생의 만족도조사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을 규정(안 제15조의2).
- 나. 현장실습생의 평가 및 만족도조사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 제3항).

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 (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) ① 현장실습산업체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산업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현장실습산업체는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현장실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현장실습산업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의 현장실습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,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, 제8조의 다음연도 운영계획 수립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5조의2 (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) ① 현장실습산업체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산업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현장실습산업체는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현장실습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현장실습산업체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학교의 현장실습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p>제16조(현장실습의 평가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6조(현장실습의 평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,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, 제8조의 다음연도 운영계획 수립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</p>